

「부당한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부당지원행위 유형을 추가로 예시하고 지원금액과 정상가격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며, 업계의 건의를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2. 4. 24. 「부당한지원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였다.

동 심사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부당지원유형을 예시에 추가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내에 회수하지 아니하면서 지연이자 미수령
- 계열금융회사가 대여금 회수시 약정 연체이자율이 아닌 일반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자를 수령
- 임대료를 지연수령하면서 지연이자 미수령 또는 과소수령
- 지원객체가 보유한 부동산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 고가매입

■ 지원금액과 정상가격 산정기준을 보완

-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원금액을 산정
- 개별정상금리 산출시 지원객체가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의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함
 - 유사한 시점의 범위를 현행 지원행위일 전후 1주부터 3개월 등의 기간을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명시
 - 변동금리부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의 변동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원객체의 월별평균차입금리를 계산할 때 당

해 월에 차입한 자금의 규모를 가중하여 산정한 금리로 구체화

-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에 있어 정상임대료 산정방법을 법인세법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임대인이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환산방법을 부가가치세법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함
- 인력을 제공한 경우에 있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에 대한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할 때의 정상급여를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매출액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기준으로 함

■ 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

-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 사업부문을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사한 기업에 대한 지원행위에 대해 부당한 지원행위로 보지 않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완전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에게 자신의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함
-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함

■ 기타 중점심사대상의 선정요건 및 지원크기 기준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중점심사대상의 예외규정을 그대로 부당성 판단기준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이기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개정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이 지난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개정되었다.

동 심사기준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필수요소(필수설비, essential facility)의 요건

① 필수성 : 당해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용역의 생산·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경쟁열위상태가 지속될 것

② 요소의 독점적 소유 또는 통제 : 특정사업자가 당해 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을 것

③ 요소의 재생산 불가능 : 접근희망기업이 당해 요소를 재생산하거나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 법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것

2. 필수요소 접근허용 대상

필수요소 접근허용 대상은 동 요소를 필요로 하는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 또는 신규 경쟁사업자로만 한정하여 운용하고, 다만, 요소보유자의 계열회사가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예상되는 거래

분야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도 요소 접근 허용

3. 필수요소예의 접근거절·중단·제한행위의 유형

필수요소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접근이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또는 필수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사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거나, 배타조건, 끼워팔기 등 각종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4. 정당한 접근거부사유

정당한 접근거부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필수요소 보유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필수요소 보유기업의 공급 여력이 없거나, 필수요소 보유기업의 서비스 질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술표준예의 불합치 등으로 기술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이용고객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 기회 확대를 위한

정정광고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당광고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잘못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시정시키기 위한 수단인 정정광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지침을 개정하여 5. 1일부터 시행하

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그동안 부당광고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주로 사용되어 온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 제도가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오인성을 바로 잡는데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1. 1월부터 “정정광고에관한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해 왔으나, 동 지침상 정정광고명령 발동 요건이 다소 엄격하여 정정광고 활성화가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정광고로 인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소비자오인성은 효과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기존의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

정정광고운영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정광고 문안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2단계로 세분화하여 법 위반 점수가 높지 않은 부당광고에 대하여는 완화된 1단계 문안을 적용하고, 현행 정

정광고 운영지침에서는 광고표현의 부당성 정도, 광고비용 및 횟수, 광고기간, 지역적 확산의 정도 등의 요소를 가중한 점수가 71점 이상인 경우에 정정광고를 명하였으나, 이를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과 동일하게 51점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표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정정광고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정광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법 위반 점수가 높지 않은 사업자(51점 ~ 70점 이하, 1단계)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법 위반사실 공표’와 ‘정정광고’ 중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정정광고의 이행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조정(단, 전파광고의 경우는 3개월로 단축)하여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오인성을 신속하게 치유할 방침이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을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 5.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을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일지라도 후원수당 지급방법이나 판매조직운영실태 등이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할 경우 다단계조직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함으로써, 탈법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법 적용대상인 “소비자”의 범위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조건으로 구입하는 경우” 등도 포

함하여 보호대상을 확대

- 법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로서 소규모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등의 거래를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농수산물 행사 등에 대해 방문판매업 신고의무, 계약서 교부의무 등의 규제를 면제함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의 한도를 매출액의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등 현실의 실태를 반영하여 합리화하였음
- 시행령 제정(95년) 이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다단계판매로 판매할 수 있는 개별

상품의 가격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다단계판매원 모집시 후원수당의 평균과 그 분포까지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후원수당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판매원의 연락처가 변경되어 청약철회를 할 수 없거나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이 청약철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원의 청약철회 거부

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다단계판매업자는 청약철회시 반환에 필요한 금액 (3개월분 매출액) 이상을 한도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에 앞서 소비자보호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 5.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 적용대상인 “소비자”의 범위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조건으로 구입하는 경우” 등도 포함하여 보호대상을 확대
-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고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단체 등이 신고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상거래 관련 기록 중 사업자들이 보존하여야 하는 범위를 정하고, 그 보존기간을 3년

으로 하여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열람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거래기록의 소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

- 판매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거래를 보조한 결제업자·배송업자 등도 분쟁의 원인과 관련한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함
- 무조건적 청약철회로 인하여 제3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함
-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사업자는 변조된 정보의 원상회복 등을 하도록 규정하여 도용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효과적으로

- 구제될 수 있도록 함
- 전자상품권 등의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기준을 “상법상 채권 유효기간내에 있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 보증 하는 것”으로 하는 등 결제수단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
- 다음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 함
 - 계약이행 등을 위하여 상품의 배송·설치나

- 사후서비스를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
- 도용방지를 위하여 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는 경우 등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에 앞서 소비자보호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이용하는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함
- 기타 영업의 정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징수절차 등을 정함

공정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및 방문·다단계판매 관련 워크숍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3월 공포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의 7월 1일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단법인 직접판매협회』 및 『사단법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및 방문·다단계판매 관련 워크숍을 충남 도고 『한국증권연수원』에서 소비자단체 임·직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전자상거래 및 방문·다단계판매사업자, 지자체 공무원 등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5월 17일부터 2일간 개최되었다.

동 워크숍은 현재 입법예고중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법집행 담당자, 업계, 소비자단체 및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중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

에 대한 토론 및 합리적 대안 도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주요 쟁점내용으로는 첫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에서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의 보존기간을 현 시행령안에서 상법상 상사 문서의 보존기간을 감안하여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업계는 단축희망, 둘째,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40%)이나 상품판매 가격의 제한(150만원)의 적정 수준에 대해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며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하향조정 희망, 셋째, 다단계판매 및 결제수단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한도에 대해 업계는 하향조정 희망, 넷째,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은 다단계판매 조직으로 보게 되는 바, 방문판매업계는 판매원을 관리하는 자는 판매원의 단계에서 제외 희망 등이다.

하도급업자에 대한 현금성지급 비율 높아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을 주고 있는 8천개 대형업체(원사업자)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 비율 및 대금지급조건이 크게 개선되고 법 위반업체수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서면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하도급대금결제에 있어서 현금성결제 비율이 2000년 조사시 44.2%, 2001년 64.3%, 2002년에는 77.1%로 대폭 증가한 반면, 어음결제는 2000년 55.8%, 2002년 21.8%로 크게 감소하여 어음부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하도급대금지급조건을 보면,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 업체비중이 2000년 조사시 75.7%에서 2002년 88.0%로 증가한 반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업체비중은 2000년 24.3%에서 2002년 12.0%로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어음결제에 있어서도 60일 이내의 단기어음비중이 2000년 조사시 40.5%에서 2002년 62.2%로 21.7%p 증가한 반면, 91일 초

과 장기어음비중은 2000년 21.8%, 2002년 11.3%로 절반정도 감소하였다.

이는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확대 실시 하고, 아울러 현금성결제에 대한 과징금 감면, 직권조사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결제체도를 적극 도입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22,364개의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5. 31까지 일제히 점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주요내용

- ※ 하도급법 : 벌점감점(현금결제비율 60%~80% : 1점, 80%이상 : 2점), 과징금 감면(산정 과징금의 50% 감면) 및 현장직권조사 면제
- ※ 조세특례제한법 :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구매전용카드 결제액-어음발행액) ×0.5%, 산출세액의 10%까지 공제

『월드컵관련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제보된 음식업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 2월부터 월드컵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월드컵 특별대책반』과 『월드컵관련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개

설·운영중에 있으며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보된 음식업 분야의 가격담합 혐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4월말부터 조사에 착수기로 하였고, 조사

결과 적발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예방차원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교육 및 홍보

를 병행하며, 음식업외에 숙박, 여행, 렌트카업 등 외국관광객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손해보험사에 대한 전면실태조사 실시

공정위는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장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손해보험업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였다.

그간 학계와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도개선방안과 거래행태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4월 29일, 16개 손해보험사(4개 외국 손해보험사(지점) 포함)들에게 서면조사표를 발송하였으며, 5월중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면조사표 주요내용을 보면, 제도개선부분은 보험시장 진입에 대한 허가제 운영실태, 공동보험요율의 운영실태, 부수업무 영위에 대한 허가제 실태, 보험상품개발에 대한 신고제 운영현황, 보험사들의 소비자불만 처리제도 운영실태 등이고, 거래부분은 보험료율 변경현황, 대리점 지급 수수료 현황, 상호협정서 체결 실적, 보험약관 내용 등이다.

금번 실태조사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발보다는 경쟁제한적이고 소비자불편을 초래하는 체도를 발굴·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될 것이다.

손해보험업 분야는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쟁제한적 제도와 일부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

국내보험사들의 경우, 보험요율 책정·신상품

개발·부수업무 영위 등에 관한 경쟁제한적 제도로 인해 창의적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거의 획일적인 보험서비스만 접하게 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은 리베이트 제공, 무분별한 모집행위 등 음성적 거래관행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하반기중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2002. 4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

공정위는 2002년 4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4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2년 4월중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는 356개에서 358개로 2개사가 증가하였고,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출자총액 제한기업집단은 제외)의 계열회사 수는 348개에서 349개로 1개사 증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수는 2002. 4. 1. 704개에서 2002. 5. 1. 현재 707개로 3개사가 증가하였다.

2002. 4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2. 4. 1.	편 입			제 외						증감	2002. 5. 1.
		회사 설립	주식취득 및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기타	계		
전 체	605	1	1	2	1	1	-	5	-	7	3	707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192	-	-	-	-	-	-	5	-	5	2	358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413	1	1	2	1	1	-	-	-	2	1	349

2002. 4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4개사(주식취득:1, 회사설립:2, 기타:1) □ 제외 : 1개사(합병)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업종명	사 유	회사명	업종명	사 유
엘 지	엘지전자(주)	가전제품 제조업	회사설립	-	-	-
두 산	(주)만보사 커뮤니케이션	광고대행업	주식취득	-	-	-
현대산업개발	미세스필스 코리아(주)	식품수입 도소매업	회사설립	-	-	-
한국타이어	신양관광개발(주)	건물관리용역업	기 타	-	-	-
대 성	-	-	-	대구도시가스 엔지니어링(주)	토목시설물 건설업	대구TRS에 포함 병(2002. 1. 4)



『제1회 대학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 경연대회』 개최

대학생들이 가상으로 공정거래사건을 설정하고 직접 위원·심사관·피심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불공정성 여부·적용법조·제재수준 등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게 되는 『제1회 대학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 경연대회』가 전국 14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월 16일~17일 2일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공정거래협회가 후원한 이날 모의 공정위 심판 경연대회 영예의 공정경쟁 대상(국무총리상)에는 재정적으로 탄탄한 전자회사가 부실금융사를 돕기 위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한 사건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경북대학교가, 우수상(공정거래위원장상)에는 자동차업계의 공동행위사건을 전개한 숙명여자 대학교와 옥돌메트제조판매 3사의 부당공동행위를 다룬 영산대학교가, 장려상(공정거래협회장상)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병합건을 다룬 서울대학교와 부당염매행위를 다룬 고려대학교, 불공정약관조항을 다룬 충남대학교가 차지했다. 이번의 대상 및 우수상 수상자가 행정고시·사법시험 등에 합격하여 임용 자격을 갖추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의 특전이 부여된다.

이날 개회사에서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과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대학에서의 공정거래법·제도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이번 경연대회가 공정거래법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폭되는 계기가 되어 우리 경쟁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했다.

이번에 개최된 제1회 대학생 모의 공정위 심판 경연대회는 신산업·신경제 시대에 벌어질 수 있는 불공정 사건에 대한 대학생들의 재치와 지혜가 번득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 소재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과 비슷한 경우도 있고 실제 장래에 사건화 될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여겨지는 소재



도 적지 않았다”며 “대학생들의 소재 선택이 매우 날카로웠다”고 평가했다.

대학생들이 불공정거래 의혹을 갖고 심판대에 올린 주제는 ▶(주)세계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연세대) ▶(주)조니 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전북대) ▶(주)도우미 커뮤니케이션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프리텔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병합건(서울대) ▶(주)DOOMAIL과 (주)LOVER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건(부경대) ▶SJ엔터테인먼트의 소속연예인에 있어서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및 특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성균관대) ▶(주)매직소프트의 부당염매행위 및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고려대) ▶한탕산업(주)의 2개 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원광대) ▶석유공사의 부당한 내부거래행위에 관한 건(인하대) ▶안심전자(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경북대) ▶3개 신변보호사업자의 신변보호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충남대) ▶(주)누구나소프트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순천향대) ▶4개 자동차업체와 자동차공업협회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숙명여대) ▶(주)선중일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한국의대) ▶옥돌메트제조판매 3사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영산대) 이다.

공정위 인사동향

인사발령일 : 2002. 4. 25.

◎ 과장급(서기관) 전보

독점관리과장

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 파견

(파견기간:2002. 4. 25~2003. 4. 24)

박선광(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 파견)

김재중(심판관리3담당관실)

인사발령일 : 2002. 5. 4.

◎ 서기관 승진

박도하(송무담당관실)

홍용수(기획예산담당관실)

김윤수(독점정책과)

엄기섭(경쟁촉진과)

정진욱(소비자기획과)

인사발령일 : 2002. 5. 16.

◎ 부이사관 승진

기획예산담당관

독점정책과장

조사1과장

김상준 서기관

이재구 서기관

최정열 서기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작성

본 협회에서는 각 회원사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편람을 업종에 맞게 작성해 드리고 있으니,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작성 계획이 있으신 각 회원사는 상담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75-8870~2 / FAX (02)775~8873